

## 사규심의위원회 의결서

제27회 사규심의위원회		
2020년 3월 11일 의 제	제27회 - 1호 운영지원직 관리규정 개정(안)	
구 분	의결사항	수정의결

제 안 자 총무부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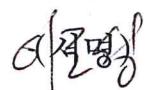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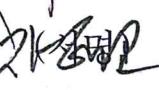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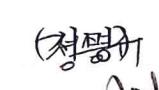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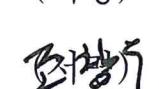
제안사유 2019년도 임금협약 합의 결과를 반영하여 직급급을 개정하고자 함.

주 문 운영지원직 관리규정 개정(안)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.

의결사항 수정의결

제27회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함.

2020년 3월 11일

위 원 장	강 신 흥	
부위원장	정 록 성	
위 원	김 옥 선	
위 원	이 도 성	
위 원	차 태 교	
위 원	정 승 규	
위 원	정 봉 희	
위 원	정 훈 택	(서명)
위 원	조 창 우	

## 사규심의위원회 의결서

제27회 사규심의위원회		
2020년 3월 11일	제27회 - 2호	
의 구 구	제 제 분	보수규정 개정(안)
		의결사항

제 안 자 인사노무부장

제안사유 2019년도 임금협약 합의 결과를 반영하고, 통상임금에 자가운전지원비를 포함하며 이외 규정의 오탏 수정 및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고자 함.

주 문 보수규정 개정(안)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.

의결사항 수정의결

제27회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함.

2020년 3월 11일

위 원 장	강 신 흥	(서명)
부위원장	정 록 성	(서명)
위 원	김 옥 선	(서명)
위 원	이 도 성	(서명)
위 원	차 태 교	(서명)
위 원	정 승 규	(서명)
위 원	정 봉 희	(서명)
위 원	정 훈 택	(서명)
위 원	조 창 우	(서명)

## 사규심의위원회 의결서

		제27회 사규심의위원회
2020년 3월 11일 의 구	제 제 분	제27회 - 3호 복리후생규정 개정(안) 의결사항 수정의결

제 안 자 인사노무부장

제안사유 후생비의 지급기준·지급액·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녀학비보조금 및 피복지급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주 문 복리후생규정 개정(안)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.

의결사항 수정의결

제27회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함.

2020년 3월 11일

위 원 장	강 신 흥	(서명)
부위원장	정 록 성	(서명)
위 원	김 옥 선	(서명)
위 원	이 도 성	(서명)
위 원	차 태 교	(서명)
위 원	정 승 규	(서명)
위 원	정 봉 희	(서명)
위 원	정 훈 택	(서명)
위 원	조 창 우	(서명)

## 사규심의위원회 의결서

제27회 사규심의위원회		
2020년 3월 11일 의 구	제 제 분	제27회 - 4호 사규관리규정 개정(안) 의결사항
		원안의결

제 안 자 법무실 부장

제안사유 정관에 관한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규 심의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주 문 사규관리규정 개정(안)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.

의결사항 주문과 같음

제27회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함.

2020년 3월 11일

위 원 장

강 신 흥

부위원장

정 록 성

위 원

김 옥 선

(서명)

위 원

이 도 성

위 원

차 태 교

위 원

정 승 규

위 원

정 봉 희

위 원

정 훈 택

(서명)

위 원

조 창 우